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 자격인증 관리 지침

제정 2021. 6.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자격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출성 상품"이란 「은행법」에 따른 대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써 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3조제2항의 금융상품을 말하다.
- 2.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3. "협회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4. "등록교육"이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로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5. "보수교육"이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자의 자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6. "평가"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그 자격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 7. "대출·기타 대출성 상품"이란 대출, 어음할인, 매출채권 매입, 지급보증 등이와 유사한 대출성 상품을 말한다.
- 8. "리스·할부 상품"이란 시설대여, 연불판매 및 할부금융 상품을 말한다.

제2장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제도 운영위원회

제3조(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제도 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자격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교육·평가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3장 교 육

제4조(등록교육의 종류 및 대상)

- ① 등록교육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려고 협회등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그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력 등록교육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중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만 해당) 또는 2021년 3월 25일 이전 5년 내에 협회등에 등록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다만, 신용카드만을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24시간 이상)을 말한다.
- 2. 신규 등록교육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협회등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48시간 이상)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교육은 수강자가 취급할 대출성 상품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경력 등록교육(대출·기타 대출성 상품)
- 2.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경력 등록교육(리스·할부 상품)
- 3.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대출·기타 대출성 상품)
- 4.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신규 등록교육(리스·할부 상품)

제5조(보수교육)

- ① 보수교육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보수교육을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인으로 협회등에 등록된 해당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6조(교육기관)

-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한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협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금융연수원
- 2. 보험연수원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협력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은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협력 교육기관은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방법 및 이수자 관리)

- ①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교육의 이수기준은 진도율 100%로 한다.
- ③ 교육과목은 금융관련 법률, 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제2항의 이수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에 대하여 수료증 (별지서식 제1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수료증의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등에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 협의체)

-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기관 협의체는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③ 교육 운영과 관련한 비용 분담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평 가

제9조(평가 응시대상 및 종류 등)

-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의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인증 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
- ② 자격인증 평가는 응시자가 취급할 대출성 상품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대출·기타 대출성 상품)
- 2.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 등록 자격인증 평가(리스 · 할부 상품)
- ③ 대출성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2종의 자격인증 평가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평가 과목 및 문항 수, 배점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응시자격
- 2. 평가일정 및 장소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4. 평가과목 및 배점
- 5. 합격기준
- 6. 기타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일 15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등)

- ① 평가는 1차 필기시험으로 하며, 평가문제의 형식은 선다형 및 진위형으로 한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문제의 출제 및 의무)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은행을 구성하며, 문제은행에서 매 평가 차수별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 ② 제1항의 문제은행의 문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위촉한 출제위원이 개발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관계부서의 감수를 거쳐 구성한다.
- ③ 출제위원 및 감수자는 서약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출제 및 감수 시 유의사항과 서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응시)

- ①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공고된 방법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 시행계획 등을 참고 하여 본인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응시원서를 접수한 모든 응시자는 [별표2]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합격자 결정 및 효력・관리)

- ① 평가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평가 답안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시자의 합격여부를 여신 전문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응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평가 합격자에 대하여 자격인증서(별지서식 제2호)를 교부하다.
- ④ 자격인증 평가 합격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인증서의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응시자가 [별표2]에서 정한 '부정행위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평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평가 합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 2.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합격한 자

제16조(평가의 감독)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공정한 평가시 감독을 위하여 고사실마다 2인의 감독자를 배치하되 평가 장소, 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관리를 위하여 응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물 희수)

감독자는 평가 종료 시 답안지, 문제지 등 일체의 평가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제기)

- ① 응시자는 해당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평가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관계서류의 보존)

-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응시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와 관련한 서류를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존한다.
- 1. 문제지 및 답안지 : 3개월
- 2. 채점결과 : 1년
- 3. 합격자 명부 : 3년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평가과목 및 문항수

명기 기 I	세부교과목		묘원스	-111-z)
평가과목	대출	리스·할부	문항수	배점
금융기초	 금융과 금융제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법률기초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무 기초 재무기초 		10	20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준수사항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내부통제 및 준법 윤리경영 및 직무윤리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감독방향 및 분쟁사례 		15	30
금융상품	 금융업법 여신관련 규정 대출상품 약정서 실무 담보제도 	 리스·할부 관련 법률 여신관련 규정 리스·할부 금융상품 여신거래계약 담보제도 	15	30
고객관리	신용관리·신용정보 금융기관 신용관리 신용점수(개인CB) 개요 고객상담 실무 재무관리 실무 재무제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상담		10	20
합계			50	100
평가시간			90분	

[별표 2]

응시자 준수의무

1. 응시원서 접수

- 가.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나.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응시원서 접수 취소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평가일의 7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3. 응시료

- 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부를 응시자에게 반환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부터 평가일 7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50%를 응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4. 웅시자 준비물

- 가.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 나, 응시자는 수험표,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을 준비하여야 한다.

5. 부정행위 등 금지

-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응시원서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 (2) 응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응시하는 경우
- (3) 답안지 및 문제지 이외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받는 경우
- (4) 답안지, 문제지 및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평가물 등을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
- (5)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거나 이용하는 경우
- (6) 평가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
- (7)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8) 타인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는 행위, 평가내용과 관련된 메모나 요약자료를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 (9) 그 밖에 평가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6. 평가물의 유출금지

- 응시자는 문제지, 답안지,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평가물 등을 평가장 밖으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7. 중도퇴실

- 평가 중 응시자는 질병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정으로 평가를 끝마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시간(총 90분) 종료 30분 이전까지는 중도 퇴실할 수 없다.

8. 답안지 작성

- 가. 답안의 작성방법
- (1)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 해당란 안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2) 본인의 수험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답안지는 0점 처리한다.
- (3) 한 문항에 2개 이상 표기하거나 표기한 답란 이외에 부정표기하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 나. 성적처리는 답안 리더기의 처리결과에 따르며, 답안 작성 오류(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부정확한 표기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별지서식 제1호]

제 호

수 료 증

성명:

과 정 명 :

수 료 일 :

위 사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상기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명 (관인)

[※] 수료증 상 성명, 과정명, 수료일, 수료번호, 발급일, 교육기관명, 관인을 포함하되,그 외 세부내용 및 양식은 교육기관별로 정할 수 있음

[별지서식 제3호]

제 호

자 격 인 증 서

성 명: 자격구분: 인증일:

위 사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평가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관인)

서 약 서

본인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인증 평가문제 (출제· 감수)를 함에 있어 평가에 관한 제 법규와 위원회의 출제(선정, 채점)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출제과목:

(출제·감수)위원: (인)